

서울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민원상담)

[신청인정보]

공개여부	비공개	성명	Giny Woo		
이메일	Koreandogs.org@gmail.com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서신통지	미신청	주소	-	PO Box 60191 Sunnyvale, CA 94088 USA	

[민원내용]

접수번호	202010061444298178	접수일	2020-10-06	처리기한	2020-10-15
제목	대한민국 부산 광역시 강서구정부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내용	<p>대한민국 부산 광역시 강서구정부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p> <p>대한민국 부산 광역시 강서구정부에게 청원합니다!</p> <p>우선 “대한의 육견인들 (https://youtu.be/cCdTceduKcY)”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p> <p>대한민국정부가 개고기를 다루는 불법 개농장, 도살장, 시장, 보신탕집, 건강원을 단속하는 즉각적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한국정부, 경찰청, 사법기관이 아래와 같은 기존 한국법 시행을 요구하는 공식문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합니다.</p> <p>? 개의 사육단계에서 식용견 사료용으로 음식쓰레기를 무단처리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 15조의 2, 제 25조 3항 위반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운반자들은 이 의무규정을 위반하고 개농장주에게 음식쓰레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 <p>? 허가 없이 음식쓰레기를 수집/운반하여 개에게 급여하는것은 사료관리법 제 14조 1항 및 2항의 위반입니다.</p> <p>? 불법으로 난립된 개농장에서 배출되는 분뇨로 인한 환경위해는가축분뇨법 제 11조의 위반입니다. 개농장의 배설물은 인근 지역 환경 피해를 유발합니다.</p> <p>? 식용하기 위한 개도살은 동물보호법 제 8조 1항 4호의 위반입니다. 개도살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나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로 명백한 법 위반 행위입니다.</p> <p>? 전기감전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 8조 1항 1호의 위반입니다. 도구, 약물 또는 열, 전기, 물을 이용한 상해 행위마저 법적 처벌의 대상인 만큼 당연히 상기 방법에 의한 도살 행위는 위법이며 특히 전기도살은 그 잔인함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p> <p>? 무허가 도살장에서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7조 1항 위반입니다.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도살, 식육으로의 유통이 불가능’한 동물로서 허가받은 도살장이 존재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 도살장을 운영하는 공급업체는 법의 매개 변수를 벗어나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p>				

?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 10조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7조 1항 2호의 위반입니다. 모든 동물은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안되는데, 개도살의 경우 인도적인 방법은 약물주사 외에는 없으므로 현재 한국에서 자행되는 모든 식용 목적 개도살은 잔인한 도살에 해당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 허용'은 고시로 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족에 한하며 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재래시장에서 개의 지육을 전시/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 5조의 위반입니다. 불결한 불법도축과 지육 전시과정에서의 오염으로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 조항에 위배됩니다. 개의 지육이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유기견이나 개농장의 병든 개체가 도살돼 판매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병든 동물의 고기 등의 판매금지' 조항에 위배됩니다.

? 보신탕집에서 출처 불명의 개고기를 이용한 보신탕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 1항 1호의 위반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은 운반, 보관, 진열, 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개식용에 관한 법적 정보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이 발간되었습니다!”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ekara.org/activity/against/read/7537>

미국 하원은 공식적으로 결의안 H.Res 401 “개와 고양이 식용산업을 종식시키고 모든 국가가 개와 고양이식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를 통과시켰습니다.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resolution/401>)

대한민국에서 자행되는 잔인한 개/고양이 식용산업에 대한 외신 보도가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이 비극을 끝낼 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내용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정부는 개식용을 금지하라!

동물의 참혹한 희생이 집중되는 복날, 정부는 언제까지 개식용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으로 중국 우한시 야생동물 고기 밀거래 시장이 지목되며, 중국은 지난 5월 29일 목적법 상 가족·가금의 목록에서 개를 제외하는 개식용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개 지육의 메카 중국의 개식용 금지에 대한 방향성 제시는 전 세계 개식용 종식 역사의 쾌거이며, 비위생적 환경에서 자행되는 동물의 불법 도살이 가진 위험성을 인지한 중국 정부의 적극 결단이 아닐 수 없다.

개식용 금지에 대한 국제적 변화의 흐름 속 우리는 오늘 여전히 개 지육 대량 소비국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임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1950년 홍콩을 시작으로 대만,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 개식용 제한 및 금지 조치가 단행되고 있다. 2020년 중국 선전시의 개·고양이 식용 금지령에 이어 지난 4일 인도 나갈란드 주의 개고기 판매 및 식용 목적의 개 수입·거래 금지 소식이 전해지는 사이, 해묵은 개식용 논쟁 해결에 영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정부는 대체 문제를 타개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과히 의심스럽다.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소위 '식용견'이라 불리는 개들은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끔찍한 동물 학대를 경험한다. 밀집 사육에 오랜 뜬 장 생활로 발이 붓고 피고름이 차며, 상처와 질병으로 인한 폐사를 막기 위해 항생제를 과다 투여받는다.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개도살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동물 학대다. 개의 목을 매달아 죽이거나 물을 뿌려 전기 쇠꼬챙이로 기질시키는데, 때로는 개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감전으로 죽음에 이르기도 하며 이는 운동 근육이 다 찢어지는 수준의 극심한 고통을 야기시킨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는 동물 학대 행위임이 명백하다. 개식용의 금지야말로 식용을 목적으로 희생되는 개들의 짧은 삶의 전 과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끔찍한 학대를 멈추는 유일한 길이다.

오랜 악습이자 동물 학대의 결정판인 개식용을 종식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천만 시대를 넘어 국민 20% 이상이 반려동물과 가족으로 살아가는 지금 국민의 생명존중 의식도 보다 성숙해지고 있다. 매년 복날이면 수많은 이들이 타오르는 뿔약별 속 거리로 나와 개식용 종식을 부르짖는다. 어디 이뿐이라.

내용	<p>지난 2018년 이미 40만 이상의 국민이 개식용 금지를 요구했고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트로이카 법안이 20대 국회에 올랐다. 2016년 성남 모란시장에서는 개도살이 금지되고, 2019년 7월에는 수십 년 개 도살로 인한 피의 역사를 가진 부산 구포 개시장이 거센 개식용 종식의 물결 속에 사라졌다. 청와대마저 “이제는 반려동물로 자리매김한 개를 축산법에서 제외할 때가 되었다”며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의 준비를 약속했다. 또한 사법부 최고기관 대법원도 지난 4월 개 전기도살이 사회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잔혹한 방법이자 동물 학대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했다.</p> <p>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상황은 통탄스럽기만 하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겠다는 청와대의 약속은 말뿐인 약속으로 남았고, 개식용 종식의 국민적 열망이 담긴 트로이카 법안은 국회 휴짓조각으로 사라졌다.</p> <p>정부와 국회는 개를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변명으로 개식용 종식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어왔다. 그러나 40만 이상 국민이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여 청원하고 매년 수백 명의 사람이 거리로 뛰쳐나와 개식용 종식을 외치며, 전국 대표 개시장과 개도살장이 철거되고 한국의 개식용 산업이 이미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개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난 지 오래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비겁하게 ‘사회적 합의’라는 방패 뒤에 숨어 민의를 저버려서는 안된다.</p> <p>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정부는 개식용을 금지하라!</p> <p>2020년 7월 16일</p> <p>나비아사랑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 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전국동물활동가연대</p> <p>https://ekara.org/activity/against/read/13287</p> <p>https://koreandogs.org/kara-drive-through-rally-2020/</p> <p>Busan Gangseo-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markets and restaurants.</p> <p>Petition: https://www.change.org/p/busan-gangseo-gu-district-mayor-no-gi-tae-busan-gangseo-gu-korea-shut-down-the-illegal-dog-meat-farms-markets-and-restaurants</p> <p>Dear District Mayor No Gi-Tae and the Busan Gangseo-gu Council members,</p> <p>Please watch this documentary, “The Dog Meat Professionals: South Korea” https://youtu.be/cCdTceduKcY.</p> <p>We ask you to take immediate action to crack down on the illegal dog farms, slaughterhouses, markets and restaurants that serve dog meat in your District. We request that an official document be issued, mandating that the following existing Korean laws be enforced by its government officials, police and judges:</p> <p>Unauthorized processing of food waste fed to dogs in the meat trade is a violation of the Wastes Control Act, Article 15-2, Article 25, Section 3. Suppliers of food waste and transporters of food waste to dog meat farms are violating this regulation.</p> <p>Food waste fed to dogs in the dog meat trade is a violation of the Control of Livestock and Fish Feed Act, Article 14, Section 1 & 2. Unauthorized collection of food waste and the act of feeding it to dogs in the meat trade is in violation of this regulation.</p>
----	---

내용	<p>Excrement and resulting environmental damage produced as a by-product of the illegal dog meat farm is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Excreta Article 11. The excrement produced at dog meat farms causes environmental damage to the immediate and surrounding area.</p> <p>The act of the slaughtering of dogs for human consumption is a violation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8, Section 1, Clause 4. The act of the slaughtering of a dog, without justifiable ground ? such as out of necessity for veterinary treatment, or in circumstances of immediate threat, harm or damage to human life or property, is a violation.</p> <p>The slaughter of dogs by electrocution is a violation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8, Section 1, Clause 1. Inflicting injury or death to any animal by the following means: battery by tools, exposure to drugs, exposure to extreme heat or fire, electrocution and drowning is subject to legal punishment. Therefore, the routine slaughter of dogs by butchers and farmers by these methods is in violation of the Act. Further, electrocution as a method of slaughter is internationally recognized as an inherently cruel method of slaughter and banned globally.</p> <p>The slaughter of dogs from an unauthorized slaughterhouse is a violation of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7 Section 1.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states that dogs are officially recognized and classified as “animals” that are “prohibited from being slaughtered and distributed as food for human consumption”. Therefore, those vendors operating dog slaughterhouses are operating outside of the parameters of the law and in violation of the law.</p> <p>The slaughter of dogs for his/her own consumption is a violation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10. The intent of the Act is to ensure that no animal is slaughtered in a cruel or revolting manner, and shall be free from unnecessary pain, fear, or stress during the process of slaughter. Therefore, the only humane way of slaughtering dogs would be by euthanasia (lethal injection). All currently practiced methods of slaughter by butchers, farmers and traders excludes euthanasia as a method of slaughter, therefore they are all in breach of this Act. This is also a violation of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7 Section 1 Clause 2. According to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the slaughter of animals for his/her own consumption is allowed only for the livestock animals that are publicly announced as classification of livestock in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nd dogs are not classified here.</p> <p>The display and sale of dog carcasses in traditional outdoor markets is a violation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4, 5. Violation of laws banning the sale of harmful food due to the contamination from unsanitary and illegal slaughter of the animal and display of the dog carcass. For example, dog carcasses are routinely contaminated by microorganisms that cause human diseases and food poisoning; this can lead to serious and life threatening health complications. There are also strict laws that ban the sale of meat from sick animals, due to the fact that there is no quality control or formal monitoring of slaughter practices in the dog meat trade it is very likely that violation of these laws is happening routinely.</p> <p>Dog meat restaurants’ sale of dog meat soup made with dog carcasses from an unknown source is a violation of Food Sanitation Act Article 44 Section 1 Clause 1. Uninspected livestock products must not be transported, stored, displayed, sold or used for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f food for human consumption.</p> <p>Please refer to the legal information regarding the dog meat consumption in South Korea published by KARA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https://www.ekara.org/activity/against/read/7537 https://koreandogs.org/kara-publishes-legal-information-booklet-ending-dog-meat-consumption/</p> <p>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has formally passed H.Res. 401, “Calls for an end to the dog and cat meat industry and urges all nations to outlaw the dog and cat meat trade.”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resolution/401)</p>
----	--

내용	International coverage of the brutal dog and cat meat trade in South Korea has stained your District's image. The time to end this tragedy is now. An online petition calling for your immediate action to end the horrendous South Korean dog and cat meat cruelty is in progress: https://www.change.org/p/busan-gangseo-gu-district-mayor-no-gi-tae-busan-gangseo-gu-korea-shut-down-the-illegal-dog-meat-farms-markets-and-restaurants The favor of your reply is requested.				
접수자		연락처		목록번호	78306

[상담내용]

접수번호	202010120914408178	답변일자	2020-10-15		
담당부서	행정문화국 민원봉사과	담당자	권요경	연락처	051-970-4241
제목	[전자결재임시저장]				
내용	<p>1. 구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p> <p>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부서별 처리상황을 알려드립니다.</p> <p>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봉사과(☎051-970-42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p> <p>[협조부서] :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답변일자] : 2020-10-12 09:22:13</p> <p>[작성자] : 차철우 [전화번호] : 051-970-2664 [이메일] : cizzca@korea.kr</p> <p>[답변내용] :</p> <p>1. 평소 식품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p> <p>2. 귀하께서 2020.10.6. 관내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에 폐쇄를 요청한 사안 중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p> <p>3. 우선, 보신탕집에서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1호 위반을 하고있다는 주장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는 축산물로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p> <p>4. 아울러, 재래시장에서 개의 지육을 판매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된다고 하신부분에 대해서도 개의 도축 장소 및 시장 등이 특정되지 않아 개의 불법 도축 여부 판단과 위해성 조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내용

5.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귀하의 문제 제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과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각종 법령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용에 현실성이 결여되는 등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해당 법령의 제·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농림축산식품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환경위생과(051-970-2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협조부서] :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답변일자] : 2020-10-13 10:07:06

[작성자] : 이은지 [전화번호] : 051-970-4612 [이메일] : ssingx2@korea.kr

[답변내용] :

1. 우리 구의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 폐쇄 요청'에 대하여 가축분뇨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 등의 유출·방치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가축분뇨 등을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경우에는 형사처벌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청소행정과(970-46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10월13일-a0-민원상담목록번호78306. 끝.

 [협조부서] :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답변일자] : 2020-10-14 09:23:26

[작성자] : 이근호 [전화번호] : 051-970-2342 [이메일] : dasan1@korea.kr

[답변내용] :

- 1.우리 구의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내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에 폐쇄를 요청한 사안 중 폐기물 관리법 위반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	<p>3. 우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 사육과는 관련이 없으며,</p> <p>4. 개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급여하는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 제46조 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의 [별표 16] 4.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나,</p> <p>5. 현재 강서구 관내의 개사육 시설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급여하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을 급여하는 위법사항이 있는 업체를 발견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p> <p>6.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청소행정과(051-970-23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p>붙임 : 2020년10월13일-a0-민원상담목록번호78306. 끝.</p> <p>----- -----</p> <p>[협조부서] : 경제산업국 농산과 [답변일자] : 2020-10-12 17:16:32</p> <p>[작성자] : 김의진 [전화번호] : 051-970-4814 [이메일] : adam4343@korea.kr</p> <p>[답변내용] :</p> <p>1.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p> <p>2. 동물 학대는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 정하고 있는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동물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단속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p> <p>3.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개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p> <p>4. 기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강서구청 농산과(☎051-970-4814, 김의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p>붙임 : 2020년10월12일-a0-민원상담목록번호78306 1부. 끝.</p>
-----------	--

[상담내용]

접수번호	202010120914498178	답변일자	2020-10-12		
담당부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담당자	차철우	연락처	051-970-2664
제목	[답변완료]				

인 쇄 자 : 권요경 민원봉사과
 인쇄일시 : 2020-10-15 12:37:33

내용	<p>1. 평소 식품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p> <p>2. 귀하께서 2020.10.6. 관내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에 폐쇄를 요청한 사안 중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p> <p>3. 우선, 보신탕집에서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1호 위반을 하고있다는 주장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는 축산물로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p> <p>4. 아울러, 재래시장에서 개의 지육을 판매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된다고 하신부분에 대해서도 개의 도축 장소 및 시장 등이 특정되지 않아 개의 불법 도축 여부 판단과 위해성 조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5.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귀하의 문제 제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과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각종 법령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용에 현실성이 결여되는 등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해당 법령의 제·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농림축산식품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그 외 궁금하신 사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환경위생과(051-970-2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	---

[상담내용]

접수번호	202010120915018178	답변일자	2020-10-13		
담당부서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담당자	이은지	연락처	051-970-4612
제목	[자동답변완료]				
내용	<p>1. 우리 구의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 폐쇄 요청'에 대하여 가축분뇨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p> <p>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 등의 유출·방치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가축분뇨 등을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경우에는 형사처벌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p> <p>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청소행정과(970-46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내용	붙임 2020년10월13일-a0-민원상담목록번호78306. 끝.
-----------	-------------------------------------

[상담내용]

접수번호	202010120915118178	답변일자	2020-10-14		
담당부서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담당자	이근호	연락처	051-970-2342
제목	[자동답변완료]				
내용	<p>1.우리 구의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p> <p>2. 귀하께서 관내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에 폐쇄를 요청한 사안 중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p> <p>3. 우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 사육과는 관련이 없으며,</p> <p>4. 개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급여하는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 제46조 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의 [별표 16] 4.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나,</p> <p>5. 현재 강서구 관내의 개사육 시설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급여하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을 급여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업체를 발견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p> <p>6.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청소행정과(051-970-23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p>붙임 : 2020년10월13일-a0-민원상담목록번호78306. 끝.</p>				

[상담내용]

접수번호	202010120915358178	답변일자	2020-10-12		
담당부서	경제산업국 농산과	담당자	김의진	연락처	051-970-4814
제목	[자동답변완료]				
내용	<p>1.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p> <p>2. 동물 학대는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 정하고 있는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동물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단속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p>				

내용	<p>3.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개는 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p> <p>4. 기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강서구청 농산과(☎051-970-4814, 김의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p>붙임 : 2020년10월12일-a0-민원상담목록번호78306 1부. 끝.</p>
----	---